깃대형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 및 관리 협조

□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 및 관리 방법 ※ 붙임 자료 참고

○ 행사장 국기 게양

-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함(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 다만, **보조적으로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u>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u>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u>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아니됨</u>.

○ 깃대형 게양

- **깃대형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달아야 함(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

- 깃대형의 경우 기관장실, 부서장실 등의 개인집무공간인 경우에는 **앞에서 집무탁상을 바라보아 집무탁상 뒤 왼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회의실 또는 강당의 경우에는 앞에서 단상을 바라보아 **단상 왼쪽에 위치**하도록 한다.(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5항)

- 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층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게양대를 **중앙에 설치**하고,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중앙에서 왼쪽 첫 번째**에 설치한다.(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

○ 국기의 깃면을 늘여 벽면에 게양 방법

-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경우는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하여야 함(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

○ 가로기 게양

- 가로변에 대칭하여 **2개의 국기**를 늘여 게양할 때(**배너형 가로기**)는 **왼쪽 국기**의 **건괘(☰)는 왼쪽 위, 오른쪽 국기**의 **건괘는 오른쪽 위**로 가도록 해야 함(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제8항)

- **가로기용 국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 **(V자형 꽂이)**는 도로와 인도의 경계선과 나란히 하여 기둥의 도로 방쪽 면에 하나의 몸체로 설치 하고 V자형의 내각은 90도 이내로 하여 부채꼴모양이 되도록 하고, V자형 꽂이와 배너형 꽂이를 함께 설치할 때에는 V자형 꽂이를 배너형 꽂이보다 높게 설치하고, 이 경우 국기를 다른기보다 아래쪽에 게양해서는 아니된다.(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항)
- **국기와 다른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차량진행방향**에서 바라보아 **국기는 왼쪽, 다른기는 오른쪽에** 위치 한다.(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제7항)

□ 기관 협조사항

○ **국기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공직자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소속·산하기관 및 시군구에도 적극 안내

- **사장에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는 사례가 없도록 행사 태극기 점검 철저**
- **실내행사장 또는 방송 송출시에 깃대형 국기를 외국기 또는 다른기와 게양할 때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 4항** 설치방법을 통해 **잘못 설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사 태극기 점검 철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국가상징 알아보기**」**배너**(각 기관 대표 홈페이지 연계), **국기 관련 법령**(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참조**

○ 청사 등에 게양(실내포함)된 국기의 깃면 및 가로기 등 **수시 점검 후 조치**

※ 오염·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고, 국기게양대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 변색 또는 파손된 국기게양대는 보수·교체(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7조)

붙임	올바른 국기 게양 방법 참고 자료

□ 행사장 국기 게양 시

올바른 게양(실물 국기+영상화면)	잘못된 게양(영상화면만 표출)

□ 깃대형 게양 시

< 올바른게양 >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반드시 오른쪽으로 오도록 하고, 가급적 행사장 내의 깃대형 태극기는 고정 배치		

< 잘못된 게양 >

□ 국기의 깃면을 늘여 벽면에 게양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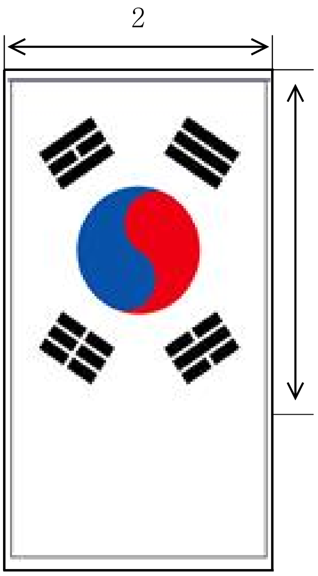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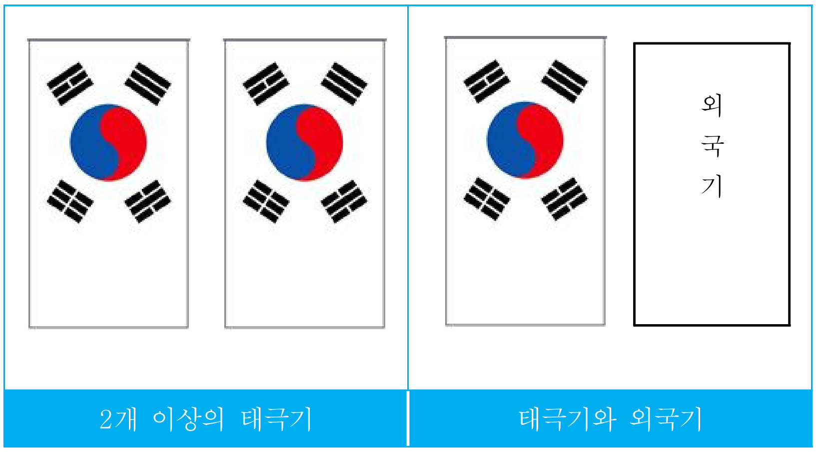

□ 가로기 게양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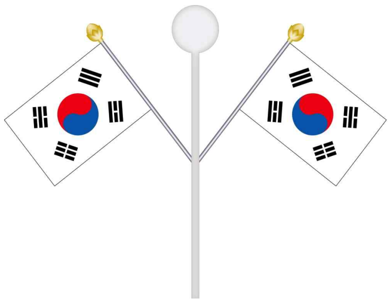

경사진 형태
(V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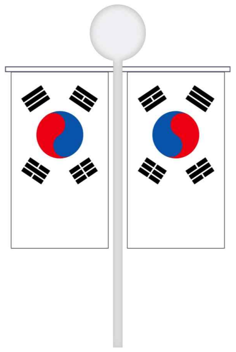

깃면을 늘여다는 형태
(배너형)

※ 가로기 게양 방법(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제8항 관련)
1. 국기만 게양할 때(차량 진행 방향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감괘(☵)가 바깥쪽 위로 가야 함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바깥쪽으로 가고, **건괘(☰)가 바깥쪽 위로** 가야 함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2. **“가로기”란 가로(街(거리가)路(길로))**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